

청주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585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58510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21. 11. 12 선고 2020가단610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조합

피고, 피항소인 F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22. 5. 12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0가단610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피고 F와 피고 학교법인 C,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의 2017. 9. 25.자 임대차계약(청주시 흥덕구 G, H

소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5층 운동시설 및 주택,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1층
I호 94.40m²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C과 피고 재단법인 D이 각 1/2 지분으로 체결)을
25,494,9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C과 피고 재단법인 D은 각
12,747,4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
종결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21. 11. 12.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
선고하였고,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, ② 이 법원은 2022. 4. 13. 민사소송법 제117조
제1항,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현금
7,318,797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(청주지방법원 2021카담50279호
결정)을 한 사실, ③ 원고가 2021. 4. 18.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, ④ 그런데
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
이 법원에 현저하다.

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송인권

판사조희정

판사성찬용